

전북연구원 금고 지정 신청 공고

전북연구원 금고지정과 관련하여 전북연구원 『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』에 따라 차기 전북연구원 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전 북 연 구 원 장

2017년 1월 23일

1. 금고지정 : 일반회계(1), 기금(1)
 - 제1금고(1순위) : 일반회계
 - 제2금고(2순위) : 기 금
2. 지정방법 : 공개경쟁
3. 약정기간 : 2년 10월(2017. 2. 28 ~ 2019. 12. 31)
4. 취급업무
 - 각종 세입금의 수납, 세출금의 지급
 -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
 - 유가증권 및 수입증지의 출납 및 보관
 -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전북연구원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
5. 신청자격
 - 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으로서 전북도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

6. 참여절차

○ 관련서류 열람

- 기 간 : 2017. 1. 23~2. 6(15일간), 09시~18시 근무시간내
- 장 소 : 전북연구원 기획행정지원부 또는
홈페이지(<http://www.jthink.kr>)/경영공시
- 열람서류 : 세입세출규모 등 관련자료

○ 신청제안서 접수

- 기 간 : 2017. 2. 3(금) 09:00~18:00, 2. 6(월) 09:00~18:00
- 장 소 : 전북연구원 기획행정지원부 *직접방문 제출
- 제출부수 : 10부(원본 1, 사본 9)
- 제출내용 : 평가항목 요구내용에 부합하는 관련 근거자료 등
(별지서식 1)
- 기타사항
 - 제시된 항목 이외에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필요한 내용은 첨부할 수 없음 → 첨부내용 평가 미반영
 - 제안서 등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 - 제안서 접수마감 후 추가서류 및 보완서류는 일체 접수하지 않음
 -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 시 작성내용이 허위로 기재되었을 경우에는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됨

7.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: (붙임) 참조

8. 평가방법

- 전북연구원 「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」에서 정한 평가 항목과 배점기준에 따라 전북연구원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제출된 제안서를 근거로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의 공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확인·심사 평가
 - ※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추가 보충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, 불응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
- 금고지정 평가 결과에 따라
 - 1순위 금융기관을 제1금고로 지정
 - 2순위 금융기관을 제2금고로 지정
- ※ 다만,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지정을 포기하는 경우 차순위 금융기관 순으로 정함

9. 기타사항

- 약정체결 :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금고 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함
- 인수·인계 : 금회 지정된 금고 책임 하에 수행
 - 신·구 금고간 금고업무 상호 인수·인계 시 기존금고에 예치한 정기예금 등에 대해서는 만기 도래한 후 인수·인계토록 함
- 손해배상 : 금회 지정 금고의 귀책에 의한 약정의 포기과 지연으로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전북연구원에 배상하여야 함
- 금회 지정 금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프로그램개발비 등 제반비용은 신청 금융기관 자체 부담으로 함
- 금고선정을 위한 기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름

10. 문 의 : 전북연구원 기획행정지원부(☎ 063-280-7125)

(별표)

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표

항 목	세부항목	배점
계		100
1.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	소 계	33
	가.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	(10)
	- 국외평가기관	(6)
	- 국내평가기관	(4)
	나. 주요 경영지표 현황	(23)
	- 총자본비율(안정성)	(8)
	- 자기자본이익율(수익성)	(7)
- 고정이하여신비율(건전성)	(8)	
2 연구원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	소 계	18
	가. 정기예금 예치금리	(6)
	나. 대출금리	(4)
	다. 공금예금 적용금리	(5)
라.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	(3)	
3. 이용 편의성	소 계	19
	가. 수납 및 지출 업무수행 전담인력	(5)
	나. 상시 출납업무 수행시 은행직원 출장 및 파견여부	(7)
다. ERP시스템과의 연계 서비스 제공	(7)	
4. 금고업무 관리능력	소 계	21
	가.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능력	(7)
	나.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	(7)
다. 전산시스템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	(7)	
5. 지역사회기여 및 연구원과의 협력사업	소 계	9
	가. 지역사회 기여 실적	(5)
	나. 연구원과의 협력사업계획	(4)
※ "지역사회에 대한 기여"는 '실적'으로만 평가, "연구원과의 협력사업"은 '계획'으로만 평가		